



의안번호	제 2021 - 19호
보 고 연 월 일	2021. 8. 17. (제111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양형기준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의결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1. 의결 주문

양형기준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형기준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을 의결하여 양형위원회가 이미 설정한 양형기준을 위 원칙에 따라 수정하고, 향후 설정할 양형기준을 위 원칙에 따라 설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음

양형기준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1. 양형기준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는 합의에 준하는 피해 회복의 인정 여부 등 각 범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1-1항 또는 1-2항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한다.

나.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 정도 등 각 범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2-1항 또는 2-2항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한다.

2. 양형기준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둔다.

가.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